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강화의 문제점과 시사점>

2025년 7월 16일 (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강화의 문제점과 시사점

2025.7.16.(수) 임석희, 김장우

- 현재 지자체장이 월 2회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월 2회 공휴일 휴업으로 강제하겠다는 것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효과에 관해서, 원래 취지였던 전통시장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대형마트 영업과 주변 상권과의 동조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전후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소비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소비 비중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2023년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대형마트 폐업이 주변 상권 매출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남
- 해외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철폐하는 추세이며, 프랑스, 영국 등 종교적 이유로 일요일 휴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국가에서도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 미국, 일본, 호주는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철폐했고, 프랑스, 영국도 전통적 휴식 문화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규제 완화를 병행하거나 절충하여 시행 중
- 온라인 상권의 성장으로 대형마트-전통시장이 경쟁적 대체관계에서 비대칭 보완관계*로 바뀌는 흐름을 고려해 의무휴업제 폐지권한을 포함하여 지자체 재량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
 - * 대형마트 영업 시 주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지만, 반대 방향의 보완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 근래에는 대형마트 숫자 또한 줄고 있고 오히려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이 주변 상권을 살리는 등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가 서로 대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해줄 필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되었는데, 온라인 상권의 발달 등 달라진 시장 상황으로 무용론이 확대되고 있음
 - 도입 취지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의무휴업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대됨
 -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2023년부터 조례를 통해 공휴일에서 평일로 휴업일을 변경하였고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유연화 논의가 진행 중이었음

- 2012년은 대형마트가 급증하던 시기였으나, 코로나 전후로 온라인 상권이 급격히 성장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점유율이 모두 줄어들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일률적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
- 무용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현재는 평일 가능)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하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 2025년 6월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완화되던 추세에 반하는 입법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 대형마트 근로자, 소상공인, 대형마트 부근 상권 관계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사회적인 논란이 큰 이슈
- 본 보고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도입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연구와 해외사례를 분석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주요 내용

- 도입 (2012년~) : 전통시장 보호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논란 발생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 (2, 4째주 일요일 휴무)
 - 도입 당시에도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보다 온라인 쇼핑,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른 곳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음
 - 이미 대형마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가기보다는 다른 날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법적·사회적 논란 (2013~2018년)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소비자 불편 등 논란은 계속됨
 - 대형마트 측에서 2013년 의무휴업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되었고, 2015년 대법원과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

- 2013년 헌법소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이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실제 제한 조치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안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제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고 영업의 자유·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
-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도모,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로 인해 소비자선택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지, 의무휴업제가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님
- 판결 취지와는 관련 없이 합법이었으므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소비자의 불편 등 논란은 계속됨

□ **규제 완화 (2022년~) :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

- 도입 초기에는 대형마트 숫자가 급증하던 시기였으나 점차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편의점·온라인 쇼핑 등으로 전환되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짐
- 2010년대 후반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매출도 감소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대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첫 규제심판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평일 전환 논의에 불을 지핌
-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여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국무조정실 주관)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측이 참여하게 대립해 2차 규제심판회의가 무기한 연기
- 정부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
- 대형마트 휴무일과 새벽 시간 등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 가능하게 한 규정¹⁾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2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평일로 변경 가능'하다는 조항

○ 정부의 '지자체 자율성 강화' 기조에 힘입어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변경 (23년 2월부터)

[표 2-1]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주요 내용

	사건 (시행일,판결일)	주요 내용	비고
도입기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2011.12)	-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는 매월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 - 영업시간 제한 (00시~08시)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동법 개정, 규제 강화 (2013.01)	- 영업시간 제한 00시~10시로 확대 및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명시 - 규제 강화 (대형마트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서 등 첨부 의무화, 영업시작 30일 전 입점계획 예고 의무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법적·사회적 논란	헌법소원 기각 (2013.12)	- 대형마트 측에서 헌법소원 제기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 - 각하 (법률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하고있다고 보기 어려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5.11)	- 영업시간 규제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지만,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았음	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헌법소원 판결 (2018.06)	-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의무휴업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 합헌 결정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_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_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도모_대형마트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규제 완화기	규제심판회의 첫 의제 선정 (2022.08)	- 대형마트 측은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며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 - 소상공인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현행 유지 요구 - 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출범 (2022.10)	- 전면적인 의무휴업 폐지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협의회를 출범시킴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합의를 유도, 2022년 12월 상생협약을 체결함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 - 의무휴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유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2023.02)	- 정부의 지자체 자율성 강화 기조에 힘입어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서울 서초구, 대구, 충주 등)	
	의무휴업일 폐지 조례안 통과 (2024.04)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조례안 통과 (대형마트 관계자나 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변경 가능) - 00시~10시 영업과 온라인 배송 금지 폐지 조례안 통과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온라인 배송 오전 10시 이전 개시 가능) ²⁾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2024.05)	- 부산 등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부산광역시 사하구, 동구, 수영구 등) ³⁾	

2) '서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조례안 통과', 《조선일보》, 2024.04.26.

3) '부산 지자체 4곳서 대형마트 일요일도 영업...오늘부터 적용', 《연합뉴스》, 2024.05.12.

3.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효과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 의무휴업제가 의도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미미했으며, 온라인 상권의 성장 기조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이 오히려 주변상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관찰됨
 - 규제 도입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모두 정체되거나 하락세인데 온라인 상권만 성장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고광용(2022)⁴⁾에 의하면 규제를 도입한 이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점유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전혀 없었음
 - 유민희(2024)⁵⁾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이러한 패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영업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됨
 - 구진경, 신동한, 조재한(2024)⁶⁾에 의하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음
- 규제 도입 당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적 대체관계였다면, 코로나 전후로 온라인 상권이 급격히 성장하여 근래에는 비대칭 보완관계의 현상이 관찰됨
 - 2014년 무렵에는 대형마트 개점 시 주변 전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면, 2024년에는 대형마트 폐점 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함
 - 권태구 외(2014)⁷⁾에 의하면 대형마트 개점 시 해당 지역의 소규모 업체 수가 감소했으나, 허성운 외(2024)⁸⁾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시 주변 2km내 상권 매출액이 약 5% 줄어듦
 - 2014년에는 대형마트가 급격히 늘어나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였다면, 2024년에는 대형마트 매출이 줄고 폐업하는 지점도 늘고있어 비대칭 보완관계로 연구의 방향성이 바뀜
 - 근래에는 대형마트 폐점이 유동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변 골목상권 매출 진수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공
 -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은 주변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골목상권의 영업이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비대칭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음

4) 고광용,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4호, 2022.12.21.

5) 유민희,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KERI Brief 24-07, 2024

6) 구진경, 신동한, 조재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KIET 산업포커스, 2024

7) 권태구, 성낙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4

8) 허성운, 진현정,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4

4. 해외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은 전반적으로 영업시간 자유화 또는 규제 완화 기준을 보이며, 중앙정부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대한 기본 틀을 정하고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추세임

□ 미국 : 시장 중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면 자유화

○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유로운 상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극대화를 위해 전통적 규제*에서 완전 자유화로 전환되었고, 주 7일 24시간 영업 가능함⁹⁾

* Local Blue Laws: 일요일이나 특정 시간에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종교·도덕 기반의 법

- 극히 일부 지역(뉴저지, 메사추세츠, 노스다코타 등)만 영업 제한하며, 주(州)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영업규제를 결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 규제는 없음¹⁰⁾

○ 영업규제 철폐로 소비자는 연중무휴 쇼핑이 가능해져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었고, 유통 업체는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얻으며 업계 전체의 경쟁력도 제고되었다고 분석됨¹¹⁾

□ 일본 : 정부에서 대규모 점포 휴무 의무화법 시행했지만 규제 회피로 인해 실패

○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앙정부가 대규모소매점포법*으로 규제했으나, 2000년 이후 중앙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자자체가 신고 및 협의(환경, 교통 등) 관리¹²⁾

* 500㎡ 이상 점포 대상 주 1회 휴무, 19시 이전 폐점을 강제하는 법

- ‘점포법’ 시행 이후 법 제정 목적과 반대로 대형 유통사가 매장을 잘게 쪼개거나 편의점·드럭스토어 등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급속 확장하는 규제 회피 현상이 발생해 소상공인 보호에 실패¹³⁾

○ 규제 철폐 이후 연중무휴 쇼핑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었고, 소상공인 쇠퇴 문제는 구조적 변화(대형 및 온라인 유통 중심)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편¹⁴⁾

□ 호주 : 소비자 편익 증대 위해 연방정부에서 주(州)정부에 규제 완화 권고

○ 실제 규제 결정은 주(州)정부 소관이지만 연방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에서 일요일 영업을 완전 허용하고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제 유지¹⁵⁾

○ 규제 완화로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었으며, 유통산업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¹⁶⁾

9) National Retail Federation(NRF), "State Blue Laws and Retail Regulations", www.nrf.com, 2024.

10) OECD,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24", OECD Publishing, 2024.

11) 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NACS), "Convenience Industry Fact Sheet 2024", www.convenience.org, 2024.

12) 日本経済産業省, 「流通政策2024: 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の現状と課題」, www.meti.go.jp, 2024.

13) 松浦 寿幸・元橋 一之, 『大規模小売店の参入・退出と中心市街地の再生』,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6-J-051, 独立行政法人 経済産業研究所(RIETI), 2006.

14) 日本経済産業省, 『電子商取引に関する市場調査報告書2024』, www.meti.go.jp, 2024

1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Retail Trade, Australia, April 2024", www.abs.gov.au, 2024.

- 일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규제보다는 직접적인 소상공업계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음¹⁷⁾

□ 프랑스 : 전통적 휴업 원칙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추세

- 종교적 전통,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연중 최대 12회까지만 일요일 영업 허가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 활성화 고려해 규제 완화 추세¹⁸⁾
 -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영업 가능 일요일이 2015년에 연간 5일에서 12일로 확대됨¹⁹⁾
 - 관광 및 비즈니스 등의 특별구역에 위치한 소매점은 연중 모든 일요일 영업을 가능하며, 2024년 기준 특구는 파리 12곳과 지방 6곳 등 18개임²⁰⁾
- 기본 원칙과 큰 틀의 규제는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특별구역 등 세부적 예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결정 및 운영 가능²¹⁾
- 점진적 규제 완화로 대규모 업체와 관광특구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소규모 업체 및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²²⁾

□ 영국 : 종교·경제 활성화 사이 절충 형태로 대형점포 일요일 6시간 영업 허용

- 전통적 종교문화와 노동자 휴식권 일부 보장 및 소형상점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사이의 절충 형태로 일요일 영업 제한적 허용²³⁾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중앙정부가 280m² 초과하는 대형점포를 대상으로 일요일 6시간 영업 허용하고 북아일랜드는 5시간만 허용²⁴⁾
 - 스코틀랜드는 일요일 영업시간에 대한 중앙 규제가 없고, 필요시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조정²⁵⁾
- 일요일 6시간 영업을 통해 소비자 편의는 일정 부분 증대되었고, 유통업계의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²⁶⁾
 - 일요일 영업시간 확대 및 규제 철폐에 대한 논의 확대 중²⁷⁾

16) Productivity Commission of Australia, "Regulation of Retail Trading Hours: Inquiry Report No. 76", www.pc.gov.au, 2023.

17) Productivity Commission of Australia, "National Competition Policy: Modelling Proposed Reforms - Study Report", www.pc.gov.au, 2024.

18)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État des lieux des ouvertures dominicales", www.economie.gouv.fr, 2024.

19)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DILA), "Ouverture d'un commerce le dimanche : quelle réglementation?", www.service-public.fr, 2024.

20) Ibid.

21) OECD, "OECD Economic Surveys: France 2024", OECD Publishing, 2024.

22) Ankorstore, "Observatoire du Commerce Indépendant 2024", www.ankorstore.com, 2024.

23) UK Government, "Sunday Trading and Retail Flexibility Review", www.legislation.gov.uk, 2024.

24) Ibid.

25) Ibid.

26)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ACS), "Local Shop Report 2024", www.acs.org.uk, 2024.

□ 독일 : 일요일 의무휴업을 통한 전통적 기독교 문화 유지

- 전통적 기독교 문화의 영향과 노동자 보호, 사회적 휴식 및 가족생활 증시 풍조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 업종만 허용함²⁸⁾
 - 약국, 주유소, 철도·공항·항만 내 매장은 24시간 전일 영업 가능²⁹⁾
-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상점폐점법(Ladenschlussgesetz)을 제정하고 관리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각 주(州)정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해 지자체에서 관리 중³⁰⁾
- 일요일 의무휴업에 대한 기독교 문화적 지지는 존재하나,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글로벌 유통환경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 유연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됨³¹⁾

5. 정책 시사점

- 결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후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미미했고 온라인 상권이 성장했으며, 이는 유통환경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
- 2010년대 중후반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세이며, 온라인 상권 점유율은 계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규제 도입 초기와 비교해 유통환경이 변함
 -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10년대 초에는 대형마트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여서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그 후 온라인 상권의 발달로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가 이전과 달라져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짐
 - 근래에는 오히려 공휴일에 대형마트 영업을 해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대형마트 폐업 시 유동인구 감소로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비대칭 보완관계)
- 해외 주요국처럼 일률적인 중앙정부 규제가 아닌, 폐지 결정을 포함해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대다수 선진국은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규제의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적 접근이 일반적 추세
 - 규제 결정 권한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있음

27) British Retail Consortium, "Retail Landscape and Consumer Trends 2024", www.brc.org.uk, 2024.

28)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Urteil 1 BvR 636/02-Ladenschlussgesetz/Sonntagsschutz,"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2004.

29)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BMAS), "Ladenschlussgesetz (Shop Closing Act)", www.bm-gs.de, 2024.

30)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BMAS), "Working Hours and Retail Law Update", www.bmas.de, 2024.

31) Deutsche Welle, "Germany's Sunday Retail Laws Under Review", www.dw.com, 2024..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재량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
 - 지역별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비중이 차이나는 등 유통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해주자는 취지
 - 정부의 단위가 작을수록 시민 생활과의 접점이 가까워져,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시민 실태를 더 밀접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이 가능

별첨.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

저자	연구명, 발간기관	주요 내용	시사점
유민희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2025), 한국경제연구원(KERI)	-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대형마트·전통시장 ↓, 온라인 쇼핑물 ↑ - 의무휴업제는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물 성장만 가속화시킴	- 해외 사례들처럼 규제를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현대적 경영 기법 도입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
구진경, 신동한, 조재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24), 산업연구원(KIET)	-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대구, 청주)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용카드 데이터 활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됨	-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 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고광용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2022), 자유기업원	- 규제 도입 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정체상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만 3배 상승 - 코로나 전후로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vs전통시장 → 오프라인vs온라인으로 변모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은 수혜자 없이 소비자선택권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만 침해했으므로 없애야 함
서용구, 조춘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2019),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 규제 이후 특정 상권의 소비증가율을 비교, 휴일 규제와 출점 규제의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 - 2013년과 2016년 대형마트 소비증가율 29.9% → -6.4%, 전통시장 소비증가율 18.1% → -3.3%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비가 모두 감소함으로써 규제 정책은 목적 달성에 실패함
허성윤, 진현정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202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대형마트 폐점이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형마트 폐점이 반경 2km 주변상권 매출액을 5.3%(주중 5.0%, 주말 7.8%) 정도 감소시켰음	- 대형마트 폐점이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주변상권 매출이 감소, 오프라인 유통 상생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
권태구, 성낙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201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대형할인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이 소매업 종별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대형마트 1개 추가 진입 시 소규모 슈퍼 5.3% ↓, 식료품 소매업체 4.5% ↓, 전체 소매업체 3% ↓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